

# 「국민체력100」 군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협 력 기 관 M O U 체 결

진천군체육회「국민체력100 진천체력인증센터」와 극동대학교「군사학과」(이하 ‘양 기관’)는 지역 주민의 질 높은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다음과 같이 MOU를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, 업무의 연계, 사업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약내용)

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가.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계협력
- 나. 체력인증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 및 대상자 연계
- 다. 정보 공유 및 협의기관 방문측정 지정일(상호협의)사항 준수
- 라.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

## 제3조(협약의 준수 및 양도금지)

- 가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상호 신의·성실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나.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## 제5조(우선협력)

이 협약의 의한 공동사업은 물론 이 협약에 의하지 않는 각 기관의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 상대로 우선 협력한다.

**제6조(협약업무진행)**

- 가. 이 협약상의 업무진행 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나.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 선정 및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7조(비밀유지)**

양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약의 효력,기간 및 해지)**

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는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 
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 할 경우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9조(보관)**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의 당사자가 기명·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7월 19일



극동대학교



진천군체육회

군사학과장

김성곤 김성곤

회장

김명식 김명식